

민족음악의 진흥책을

나 운 영

구악舊惡을 일소一掃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세워진 혁명정부에 대하여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하고 싶은 것이 많다.

1. 악기를 사치품으로 취급하지 말라

무능했던 장면 정권도 악기를 사치품으로 규정, 공포하는 데만은 유능하였으니 이런 것을 가리켜 야만적 문화정책이라고나 해둘까?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이 악법은 의당 철폐되어야 할 일이다.

2. 우리 작품을 반드시 연주하도록 법령을 제정 실시하라

브라질 음악 법령에 의하면 그 국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인은 외국인까지라도 반드시 브라질 작곡가의 작품을 적어도 1곡 이상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는 민족음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 긍지를 살리기 위함이다. 내 나라의 작품을 연주하지 않는 연주단체나 개인은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니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.

3. 국민개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라

4·19혁명이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일본 유행가의 범람이라고 나는 기회 있는 대로 공연한 바 있으나 장張정권은 그 일본유행가가 순조롭게 보급된 뒤에야 단속을 시도하였으니 「행차 뒤 나팔」격이다. 생활 혁명은 오직 국민가요의 개창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.

4. 문교부에 음악자문위원회를 두라

국전과 동격인 「전국음악 경연대회」가 없어진 것도, 악기가 사치품으로 규정된 것도 「민속음악 채보採譜사업」이 중단된 것도 —하나에서 열까지가— 모두 예술과에 음악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.

5. 음악회 면세조치와 음악저작권법을 시행하라

이 암癩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민족음악 발전은 바랄 수 없다.

< 1961. 7. 동아일보 >